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6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민홍철・이재강・박용갑

문대림 • 이연희 • 한준호

한정애・조 국・이건태

백혜련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대도시권의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업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도시의 경우점진적인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나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대도시권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도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대도시권의"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	선)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u>대</u>	<u>୧</u>
<u>도시권의</u> 주요 간선도로로서	구 50만명 이상인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	
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	
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	
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	
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